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3월 22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2년 3월 11일

나. 제안자: 윤유선 의원 외 8명

다. 회부일자: 2022년 3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3.2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윤유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제명과 목적, 용어의 정의의 “한국수어”를 “한국수화언어”로 개정함 (안 제1조,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함(안 제3조)
- 3)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신설함(안 제5조)

- 4) 강서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어교육 실시를 규정함
(안 제6조)
- 5)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함 (안 제7조)
- 6) 그 밖에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 등을 어법에 맞게 개정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한국수화언어법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해당부서: 장애인복지과
- 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2. 3. 11. ~ 3. 16.) 결과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허은옥)

가. 개정취지

-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신설하는 등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와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제명과 안 제1조 조례의 목적, 안 제2조 정의에서 약칭¹⁾인 한국수어를 한국수화언어로 개정함

1) “약칭”이란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명 및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

○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를 신설함

- 한국수어의 교육·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청각장애인 등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²⁾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·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○ 안 제5조(사업)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신설함

※ 기존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내용을 옮기고 홍보 및 관련정보 제공 사업을 신설 함

-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사업
- 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
- 수어통역 지원사업
-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정보 제공 사업
-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○ 안 제6조(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) 강서구민과 공공기관의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함

○ 안 제7조(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) 수어통역사 인력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,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

※ 기존 조례 제4조(활성화) 제3항의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

○ 그 밖에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문장부호와 띄어쓰기를 어법에 맞게 개정함

2) 농문화: 청각 장애인의 언어, 행동 양식 따위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문화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
- 「한국수화언어법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한국수어를 교육·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법 제11조에서는 한국수어의 교육 등, 법 제12조에서는 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, 법 제16조에서는 수어통역의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폭 넓게 규정하고 있음
- 본 개정조례안은 「한국수화언어법」에 의거 강서구의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수어의 활성화 및 사용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령에 부합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한국수화언어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·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할 때 농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·적용함에 있어 「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1조(한국수어의 교육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·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2조(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,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6조(수어통역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, 사법·행정 등의 절차, 공공시설 이용, 공영방송,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, 발표 내용을 농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이 구직, 직업훈련,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. 18.>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